

#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

-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: 2019. 05. 08 ~ 2019. 05. 12 (5일간) 10:00 ~ 16:00 (원활한 서류검수를 위해 16시에 입장이 마감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
- 장소 :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173번지 이안 더 부천 건보주택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	본인 / 피부양자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·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주민등록포함(세대원)하여 상세로 발급 2018. 12. 11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제출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/ 자녀	·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
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·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청약 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/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	· 입양의 경우	
신혼부부 특별공급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 혼인신고일 확인
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(만 19세이상 세대원)	본인/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, T.1577-1000) 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소득증빙구비 서류 (만 19세이상 세대원)	본인/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(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) · 직장(일반)근로자는 재직증명서,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/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	기본증명서	자녀	·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	· 입양의 경우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자녀	·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·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직계존속	·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·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
기관추천 특별공급	· 공통서류 준비		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 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 04. 18.)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